

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2018. 8. 31.

식품의약품안전처

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11호, 2018. 2. 27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8월 31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 1. 개정 이유

영·유아용 기구 및 용기·포장에 대한 사전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비스페놀 A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, 한시적으로 인정하였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하여 기준·규격화 하는 등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영·유아용 기구 및 용기·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의 기준 강화(안 II. 3. 나)

- 1) 영·유아용 기구·용기·포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 확보 및 국제 기준과의 조화 필요

- 2) 비스페놀 A(BPA), 디부틸프탈레이트(DBP), 벤질부틸프탈레이트(BBP)의 사용금지 규정을 젓병(젓꼭지 포함)에서 영·유아용 기구 및 용기·포장으로 확대
- 3)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영·유아의 보건향상

나. 한시적으로 인정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(안 III. 1. 1-2 나.)

- 1) 한시적 기준·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를 모든 식품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
- 2)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재질에 건조식품용 방습유지 용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용출규격에 규정 신설

다.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의 문구 정비(안 II. 1. 하)

기구 및 용기·포장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 명확화

3. 의견 제출

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우편번호 : 28159,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 : 첨가물기준과, 전화 043-719-2506, 팩스 043-719-250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 호

「식품위생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11호, 2018. 2. 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2018년 월 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

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II. 1. 하. 중 “제조 시”를 “제조 시 재활용 합성수지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,”로 하고, “재활용 합성수지체는 사용 할 수 있다.”을 “것이어야 한다.”로 한다.

II. 3. 나. 중 “젓병(젓꼭지 포함) 제조 시”를 “영·유아(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1. 3.에 따른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)용 기구 및 용기·포장 제조 시”로 한다.

III. 1. 1-2. 나.에 “건조식품의 방습유지 등을 위하여 수용성 물질(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물질에 한한다)이 사용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은 총용출량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한다.

부칙<제2018- 호, 2018. . .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. 3. 나.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제조·가공·판매 또는 수입(선적일 기준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II. 공통기준 및 규격	II. 공통기준 및 규격
1. 공통제조기준	1. 공통제조기준
가.~파. (생 략)	가.~파. (현행과 같음)
하. 기구 및 용기·포장 제조 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(poly(ethyleneterephthalate), PET) 및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(poly(ethylenenaphthalate), PEN)를 가열,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, 이를 다시 중합한 재활용 합성수지제는 사용할 수 있다.	하. ----- 제조 시 <u>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,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것이어야 한다.</u>
거.~러. (생 략)	거.~러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용도별 규격	3. 용도별 규격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젓병(젓꼭지 포함) 제조 시 디 부 틸 프 탈 레 이 트</u>	나. 영·유아(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1. 3.에 따른 영아 및

현 행	개 정 (안)
(di-n-butyl-phthalate, DBP), 벤질부틸프탈레이트(benzyl-n-butyl-phthalate, BBP) 및 비스페놀 A(bisphenol A, BPA)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	유아를 말한다)용 기구 및 용기·포장 제조 시 ----- ----- ----- -----
다.~마. (생 략)	다.~마. (현행과 같음)
4.~7. (생 략)	4.~7. (현행과 같음)
III. 재질별 규격	III. 재질별 규격
1. 합성수지제	1. 합성수지제
1-1 (생 략)	1-1 (현행과 같음)
1-2 폴리에틸렌(polyethylene : PE) 및 폴리프로필렌(polypropylene : PP)	1-2 폴리에틸렌(polyethylene : PE) 및 폴리프로필렌(polypropylene : PP)
가. 정의 (생 략)	가. 정의 (현행과 같음)
나. 용출규격(mg/L)	나. 용출규격(mg/L)
<신 설>	건조식품의 방습유지 등을 위하여 수용성 물질(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물질에 한한다)이 사용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은 총용출량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(안)
1)~5) (생략) 다. (생략) 1-3~1-39 (생략) 2.~8. (생략)	1)~5) (현행과 같음) 다. (현행과 같음) 1-3~1-39 (현행과 같음) 2.~8. (현행과 같음)

